㈜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대비표(2차 개정)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1차 개정)	변경 후(2차 개정)
제6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삼천만(130,000,000)주로 보통주식 ~~오천만(50,000,000)~~주, 제1종종류주식 오천만(50,000,000)주, 제2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 제3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 제4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삼천만(130,000,000)주로 보통주식 사천만(40,000,000)주, 제1종종류주식 오천만(50,000,000)주, 제2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 제3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 제4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 제5종종류주식 일천만(10,000,000)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보통주식과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4종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보통주식과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4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④ (생략) ⑤ (생략) 1. (1)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2)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은 본 호의 이익배당에 있어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과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우선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2.5%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가 발행하는 제5종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5종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1. (1)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2%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2)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2%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은 본 호의 이익배당에 있어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과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우선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1)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2.5%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3. (생략) ⑥ 최초 결산기부터 매각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어느 결산기에 직전 결산기까지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 중 어느 주식에 대하여 각 실제 지급된 배당금의 누적금액이 각 우선배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우선배당금의 누적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2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3. (생략) ⑦ (생략)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3. ~ 4. (생략)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본 호 본문과 같이 계산한 금액 중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배당한다. 다. (생략)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각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2)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2.5%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제2종종류주식과 제5종종류주식은 본 호의 이익배당에 있어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과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우선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⑦ 최초 결산기부터 매각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어느 결산기에 직전 결산기까지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제4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 중 어느 주식에 대하여 각 실제 지급된 배당금의 누적금액이 각 우선배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우선배당금의 누적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1)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2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 및 (2)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5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5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제2종종류주식과 제5종종류주식은 본 호에 따른 배당에 관하여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위 각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i)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 및 (ii) 제5종종류주식

	동순위로 각 목표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7. (생략) 가. (생략)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목표배당금 분배 후 잔여이익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⑧ 매각결산기 이후의 결산기에는 새로운 우선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매각결산기에 ~~제7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배당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결산기에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미배당금액을 배당한다. ⑨ (생략) 1.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7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7항~~ 제1호 및 ~~제8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아니한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각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의 미배당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의 각 미배당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7항~~ 제2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7항~~ 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않은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위~~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제1종종류주식 또는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종~~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5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제2종종류주식과 제5종종류주식은 본 호에 따른 배당에 관하여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위 (i) 및 (ii)의 각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i) 및 (ii)의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3. ~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본 호 본문과 같이 계산한 금액 중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각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각 목표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목표배당금 분배 후 잔여이익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⑨ 매각결산기 이후의 결산기에는 새로운 우선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매각결산기에 제8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배당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결산기에 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미배당금액을 배당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제3종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7항~~ 제5호 및 ~~제8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10.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7항~~ 제6호 및 ~~제8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별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8. (생략) 가. (생략)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후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1.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8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8항 제1호 및 제9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아니한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각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의 미배당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의 각 미배당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8항 제2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8항 제2호 및 제9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않은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각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의 미배당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종종류주식과 제5종종류주식의 각 미배당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8항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제1종종류주식 또는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및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8항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제2종종류주식 또는 제5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8항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제3종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잔여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⑩ (생략)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8항 제5호 및 제9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10.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8항 제6호 및 제9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별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제5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후 잔여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1주, 제1종종류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명확히 하면,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1주, 제1종종류주식 1주, 제5종종류주식 1주마다 1개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한다. 명확히 하면,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